

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즉시
① 신청법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	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	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		(전화번호 :)

② 사업연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③ 세액공제 금액 (= ⑪ + ⑱ + ㉕ + ㉓)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가. 직접 출자

⑥ 출자일	⑦ 투자기업명	⑧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	⑨ 세액공제 대상금액 (= ⑧)	⑩ 공제세액 (= ⑨×5%)
년 월 일				
합계				⑪

나. 창업·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해 출자

⑫ 출자일	⑬ 벤처투자조합명 (투자기구명)	⑭ 투자기업명	⑮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	⑯ 세액공제 대상금액 (= ⑮)	⑰ 공제세액 (= ⑯×5%)
년 월 일					
합계					⑱

다.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출자

⑲ 벤처투자 목적회사의 벤처기업등 출자일	⑳ 벤처투자목적회사의 벤처기업 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	㉑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금액	㉒ 벤처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	㉓ 세액공제 대상금액 (= ㉑×㉒÷㉒)	㉔ 공제세액 (= ㉓×5%)
년 월 일					
합계					㉕

라.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출자

⑳ 출자일	㉗ 민간재간접 벤처투자조합명	㉘ 투자기업명	㉙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	㉚ 민간재간접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60	㉛ 세액공제 대상금액 (㉚ 및 ㉜ 중 큰 금액)
년 월 일					
합계			㉜		㉛
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평균			㉝ 초과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(= ㉜ - ㉜)		㉞ 공제세액 (= ㉛×5% + ㉝×5%)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방법

- "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"란: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기업, 신기술사업자,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을 적습니다.
- "㉕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"란: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·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벤처투자조합 등(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합니다)을 통해 창업기업, 신기술사업자,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을 적습니다.
- "㉖ 벤처투자목적회사의 벤처기업 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"란: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한 벤처투자목적회사가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기업, 신기술사업자,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을 적습니다.
- "㉗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금액"란: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"㉘ 벤처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"란: 벤처투자목적회사의 벤처기업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일 현재의 자산총액(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과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차입한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)을 적습니다.
- "㉙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"란: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창업기업, 신기술사업자,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을 적습니다.
- 출자는 해당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또는 해당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되,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